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급식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군급식위원회 설치 등〉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6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구성	3
2.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6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제명(군인급식기본법안)	12
나. 목적(안 제1조)	14
다. 정의(안 제2조)	15
라. 군급식위원회 등(안 제5조)	17
마. 식재료(안 제7조)	20
바. 영양관리(안 제8조)	22
사. 군급식의 운영방식(안 제10조)	23
아. 출입·검사·수거 등(안 제13조)	27
자. 벌칙(안 제16조)	29
차. 부칙(시행일 등)	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음.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군인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국가 비상상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함(안 제7조).
- 라. 군 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구성

□ 제정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급식이 군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총 18조의 본문과 2개의 부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의 법률인 「학교급식법」과 비교했을 때, 일부 내용(영양교사 배치, 경비사항,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생산품의 직접사용, 징계 등)을 제외하고 조문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함.

[표 1] 제정안 조문 구성

구분	제정안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	좌동
제2조	정의	유사
제3조	국가의 임무	좌동
제4조	군급식 대상	좌동
제5조	군급식위원회 등	유사
제6조	군급식시설·설비	유사
		영양교사의 배치 등
		경비부담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7조	식재료	유사
제8조	영양관리	좌동
제9조	위생·안전관리	좌동
		식생활 지도 등
		영양상담
제10조	군급식의 운영방식	유사

구분	제정안	학교급식법
제11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좌동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12조	군급식 운영평가	좌동
제13조	출입·검사·수거 등	좌동
제14조	권한의 위임	좌동
제15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좌동
		징계
제16조	벌칙	좌동
제17조	양벌규정	좌동
제18조	과태료	좌동
부칙	제1조 시행일	-
	제2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

※ 좌동이란 「학교급식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용어를 군에 해당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한편, 동 법안은 제21대국회에서 발의¹⁾되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임기만료폐기되었음²⁾.

[표 2] 제21대국회 발의 ‘군인급식기본법안’ 주요 수정사항

구분	제정안	수정안
제1조	목적	목적에 ‘안정적인 공급 도모’ 추가
제2조	정의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명칭 변경(군급식 공급업자) 및 대상 확대(식자재 조달 위탁)
제4조	군급식 대상	군무원 추가
제5조	군급식위원회 등	군급식심의위원회→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각 세대별 급식운영위원회 구별
제7조	식재료	식자재 조달 위탁사업자 범위 확대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8조	영양관리	영양관리기준 마련 위임근거 삭제

1)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53호,)일부 문구(‘제10조의 규정에 따라’→‘제10조에 따라’)를 제외하고 내용이 동일함.

2) 법사위에서는 예산 및 정책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의견 등으로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됨.

구분		제정안	수정안
제9조		위생·안전관리	위생·안전관리기준 위임근거 삭제
제10조		군급식의 운영방식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문구 삭제
제11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군부대 장 등 준수사항에서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삭제
제12조		군급식 운영평가	삭제
제13조		출입·검사·수거 등	군의원 또는 수의관 군급식 시설 출입·검사·열람권 신설
제16조		벌칙	축산물등급 거짓기재 군급식 공급업자 벌칙규정 완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한 날→공포 후 6개월
	제2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이에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을 살펴본 후, 「학교급식법」과 조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내용 및 제21대국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장병 급식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1년 10월 장병 중심의 조달체계 개선,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음.

[표 3] 장병 중심 조달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

-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 장병복지 우선 원칙 명문화 및 장병 참여형 급식체계 제도화
-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개선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등

- 이러한 정부 대책이 일회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병들의 급식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군급식에 관한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에서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은 3개의 조문에 불과하여 군급식에

관한 충분한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급식의 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군 급식 관련 법령체계

법령	규정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군인급식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에 반해,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6년부터 「학교급식법」(총 25개 조문)이 제정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학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영양·위생·안전 관리 및 학교급식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법조문으로 구체화되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음.

-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국가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책무가 있는바, 군인의 급식이 군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장병들이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국방업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게 함으로써 집단 급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장병들의 건강 및 체력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유사한 목적으로 집단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군에 대해서도 급식에 관하여 법률적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정한 조직 또는 집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군, 학교 외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도 있음.

교정시설에서의 급식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³⁾에서 음식물 지급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⁴⁾, 시행규칙 및 「수용자 급식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바, 군급식에 대해서도 현재 3개 조문에 불과한 「군인급식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제정안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 안정성과 군급식의 자율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참고로, 군인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21대국회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급식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려는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논의된 적이 있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음식물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 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표 5] 제21대국회 급식 관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주요내용	의안번호
정성호의원안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군인급식관리위원회 설치 급식에 관한 시설·설비, 영양사 배치	제2123262호
소병훈의원안	양질의 급식 제공 군인 급식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군인급식개선위원회 설치	제2111383호
김진표의원안	균형 있는 영양공급 보장받을 권리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제2110458호
김성원의원안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급식으로 제공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제2111088호
윤주경의원안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급식으로 제공 군인 급식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제2108746호

□ 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일부 조문의 삭제 및 수정 의견을 제시함.

첫째, 농·수·축협에 대한 군 급식 위탁근거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수혜적인 규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군 급식 위탁운영 시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선행 조치에 대해서 군 급식 위탁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전문 민간 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위탁사업 본래의 효과 달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등에 대해서 주둔지 및 근무여건 등 국방·군사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식습관·신체조건 등 변화 요인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넷째,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정부입법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군인급식기본법안)

- 제정안은 「학교급식법」과는 달리 동 법안이 군급식에 관한 ‘기본법’임을 제명에서 명시하고 있음.

기본법이란 특정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정안의 경우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군급식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 및 군급식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이라는 법명 부여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군인급식’이라는 법문과 ‘군급식’이라는 법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군인급식’이라는 법문은 제명에서 단 한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군급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 및 「학교급식법」과 같이 급식의 대상(학생)이 아닌 제공주체(학교)를 법명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급식의 대상을 표현한 ‘군인급식’ 대신, 급식의 주체를 반영하여 ‘군급식’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제 정 안
<u>군인급식기본법안</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군급식</u>”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u>군급식</u>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u>군급식</u>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u>군급식</u>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급식 대상) <u>군급식</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5) 제21대국회 수정안에서도 ‘군급식기본법안’으로 수정한바 있음.

나. 목적(안 제1조)

- 제정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은 법 제정의 목적으로 ‘군급식의 질 향상’ 및 ‘군인의 건강에 기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제3조에서 국가의 임무로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군급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군급식을 위한 시설·설비 구비(안 제6조),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사용원칙(안 제7조) 및 군급식 운영방식(안 제10조) 등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하여 여러 조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 조문에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도모’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6) 제21대국회 ‘군인급식기본법안’의 위원회 수정안에서도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도모’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음.

다. 정의(안 제2조)

- ☐ 제정안은 정의규정으로 ‘군급식’과 ‘군급식위탁공급업자’를 두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 군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제정안 제11조에서는 각 군부대의 장, 군급식관계군인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준수해야 할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준수사항의 주체로 ‘군급식관계군인’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 군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이하 “<u>군급식관계군인</u>”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그런데 군급식을 제정안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식업무담당자가 군인으로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군급식관계군인’을 ‘군급식운영

관계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서도 '군급식운영관계관⁷⁾'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 단작성,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국방부는 '식단작성,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식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규정 신설의 의견을 제시함.

라. 군급식위원회 등(안 제5조)

- 제정안 제5조에서는 군급식에 관한 계획이나 군급식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군급식위원회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계획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 위탁 3.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급식에 관한 계획이나 군급식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현재 국방부에는 훈령에 따라 ‘전군급식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급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상향시키면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은 적어진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표 6] 급식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구분	전군급식정책심의위원회	급식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2024년 국방부 급식방침
주요 기능	○ 급식방침의 수립 ○ 신규급식 품목의 도입 ○ 기존급식 품목의 퇴출 ○ 급식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의 제·개정 ○ 그 밖의 급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메뉴 편성 ○ 식재료 결정 ○ 증후식류 품목 결정 ○ 기타 해당 제대의 급식관련 사안

□ 다만, 국방부장관 소속 군급식위원회에서 모든 군급식 위탁사
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군급식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제대별 군급식
위원회’를 조문에 반영하여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

제정안	수정안
제5조(군급식위원회 등) ① 국방부 장관은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 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 한 계획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 위탁 3.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급식위원회 등) ① 국방 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제대별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8) 국방부장관 소속 ‘군급식위원회’에서는 군급식 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 심의, ‘제대별 군급식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 심의 등 이원화 방안

- 국방부는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군급식 위탁’에 대해서 군급식의 위탁범위가 배송, 조달, 병영식당 운영 등 다양하므로 모든 사안을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은 부대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위원회(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식재료(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원칙을 천명하면서 그 품질관리기준 등은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각 군부대 등으로 하여금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접경지역내 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7조제3항에서는 식자재 조달 업무를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기 구축된 농업협동조합 등의 공급망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도모하고 농·축·수산물의 판로의 안정적인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특정기관을 위탁기관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조달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춘 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문의 중복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 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u>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제정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특정기관을 위탁기관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제정안 제7조제4항은 국방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9)에 동일한

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의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어 제정안에서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국방부 등에는 접경지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위한 노력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 조문의 경제성 측면에서 동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10) 제21대국회 ‘군인급식기본법안’ 수정안에서도 동 조항은 삭제된 바 있음.

바. 영양관리(안 제8조)

- 제정안 제8조에서는 군급식이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급식은 군인의 사기, 복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군인 개개인의 체력 및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건강권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병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문임.

-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의 원인 중에는 비전문적 급식운영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부대에 영양사 자격을 갖춘 군무원을 배치¹¹⁾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11)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식단편성제대에 영양사가 영양을 감안해 식단 편성 중

12)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군인급식기본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4.10.17.

사. 군급식의 운영방식(안 제10조)

□ 제정안 제10조에서는 각 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리·운영토록 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군은 군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직접 관리·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급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¹³⁾

또한 군급식의 위탁범위가 식재료 배송 및 조달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3) 국방부는 육군 12개 부대, 해군 3개 부대, 공군 5개 부대, 해병대 2개 부대 등 26개 부대에서 급식 민간위탁을 시범운영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업무 위탁시 각 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본 법률안이 군급식에 관한 기본법¹⁴⁾임을 제명에 명시하고 있는바, 기본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할 경우 개별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은 대부분 포괄적·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¹⁵⁾

따라서 전시 군납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같이 구체적 사항은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이 법률안에서 정하기보다는 전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전시 행정 수행을 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등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제정안	수정안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

14) 기본법은 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15) 「2015 개정증보판 법제실무」, 국회 법제실, p8.

16) 제21대국회 ‘군인급식기본법안’ 수정안에서도 ‘전시 군납사업소 지정’ 표현이 삭제된 바 있음.

제정안	수정안
있으며, <u>이 경우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u>	하게 할 수 있으며, <u>이 경우 전 ·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 체계 유지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u>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납사업은 농·축·수협에의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군급식 위탁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 출입·검사·수거 등(안 제13조)

- 제정안 제13조에서는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검사 및 무상 수거를 규정하고,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정안의 목적이 군급식의 질 향상 및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고,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안 제13조에 따른 군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시정명령 등은 군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방부는 학교와 달리 군은 군내 위생·안전 전문조직과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의 지휘·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제정안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

수사항) 및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점을 이유로 제정안 제13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 벌칙(안 제16조)

- 제정안 제11조에서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16조에서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 군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이하 “군급식관계군인”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④ (생략) 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정안 제16조에서는 제정안의 수범자인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모법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즉, 제정안 제16조제1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¹⁷⁾하고 있는 것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표 7] 안 제16조에 따른 벌칙과 모범상 벌칙 비교

준수사항(안 제11조제1항)	벌칙(안 제16조)	모범상 벌칙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좌동 ¹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2호)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좌동 ¹⁹⁾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34조(지리적표시권)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그런데 제정안 제16조제2항의 경우 식재료에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축산법」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학교급식법」 제23조제2항²⁰⁾에서도 제정안과 같이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법정형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제23조(벌칙)**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 8] 「축산법」 제40조 축산물 등급 거짓 기재자 벌칙(안)

구분	내용	비고
1안	삭제	모법인 「축산법」에 벌칙 부존재
2안	제정안 유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급식법」과 동일
3안	제21대국회 수정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 표시, 지리적 표시 거짓 기재의 경우와 동일

□ 국방부는 제정안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에 대해서 타 법령(모법)에 규정된 벌칙 사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개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²¹⁾.

21) 참고로, 「학교급식법」에서도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해서 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에 규정하고 있음.

차. 부칙(시행일 등)

- 안 부칙 제1조는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군급식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대는 6개월 이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정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안 제4조²²⁾ 등 다수의 조항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²³⁾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급식의 위탁범위가 배송, 조달, 병영식당 운영 등 다양하므로 모든 사안에 대해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대운영의 자율

22) 안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3)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국방부는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성을 제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